

대전지방법원 2024. 10. 15 선고 2023가단2982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8. 20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5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8,652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7. 24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,473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2. 1. 10. 대전 서구 C건물, D호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1. 7. 전 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소유권이전을 받기까지 사용 허락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내지 사용하다가 2024. 7. 9. 원고에게 인도하였다.

다. 이 사건 부동산의 2022. 1. 10.부터 2024. 1. 9.까지의 차임은 월 195,000원, 2024. 1. 10.이후 현재까지 차임은 월 200,000원 상당이고, 2019. 11.부터 2024. 6.까지 체납한 관리비는 3,152,000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5, 14, 15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차임 상당액 및 미납 관리비 청구부분에 관하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22. 1. 10.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한 날인 2024. 7. 9.까지 차임 상당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,500,000원 및 2019. 11.부터 2024. 6.까지 피고가 점유 내지 사용하면서 미납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관리비 3,152,000원의 합계액 8,652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. 7. 24.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임료감정비용 및 인도명령 강제집행비용 청구부분에 관하여

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료감정비용 597,000원 및 인도명령 강제집행에 관한 비용 224,000원을 구하나,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(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)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성호